

동행·매력
특별시서울

제331회 시의회 정례회
도시계획균형위원회

SE♥UL M!SOUL

우호도시결연 재체결 보고

2025. 6.

글로벌도시정책관

1

서울시-롬바르디아주 우호도시결연 재체결 보고

□ 추진개요

- 추진대상 :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정부 (The Government of Lombardy)
※ 서울-롬바르디아주 우호 협약 유효기간('17.9.11 체결, 3년 만료) 재체결 추진

롬바르디아주(Lombardy)

- 명 칭 : 롬바르디아주(Lombardy) ※ 주도 : 밀라노(Milano)
- 인구/면적 : 약 1,000만명('24) / 23,864km² (서울시 면적 39배)
- 주 지 사 : 아틀리오 폰타나(Attilio Fontana, 2018.3.26.~)
- 경 제 : 1인당 GDP €38,200('22)로 남부 및 도서지역(€19,040) 2배 수준(이탈리아통계청, '22)
- 산 업 : 이탈리아 최대 산업·금융 중심, 공업과 서비스업의 높은 비중
- 특이사항 : 이탈리아 최대, EU내 주요 경제 중심지

- 체결시기 : '25. 7. 4. (금)
- 체결방법 : 양 도시 대표(서울시장, 롬바르디아 주지사) 대면하여 서명

□ 우호도시 협약 내용

- 문화기업 기관 간 교류와 정보 교환, 공동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
- 중소기업과 문화산업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및 실질적 교류 협력 촉진

붙임 : 양해각서 국문 1부

□ 국문본(영문 번역)

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간
우호 교류·협력에 관한 양해각서

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(이하 “양 당사자” 라 한다)는,

- 양 당사자 간 지역 차원에서 시작된 교류 및 협력사업, 특히 문화 및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,
- 사람과 문화 간의 대화 및 이해 증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평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역사·예술적 유산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에 공감하며,
- 양 지역의 문화 및 경제 주체 간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 부문 간 협력 강화를 공통의 관심사로 고려하여,

각자의 권한과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제1조 목적 및 목표

양 당사자는 문화 및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, 기업, 협회 간의 상호교류 및 지식 공유를 증진하고, 관련 활동 및 협력 사업 간 정보 교류 및 시너지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.

이 협력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다.

-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현실에 대한 이해 증진
- 문화 행사 및 공연의 제작과 교류를 증진하고, 양 당사자의 관할 지역 내 우수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며, 심포지엄, 축제, 포럼 등 상호 참여 장려
- 문화 유산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및 가치 제고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
- 영화, 영상, 멀티미디어 제작을 위한 양 당사자의 관할 지역 내의 주요 명소 홍보
- 단일 기업 또는 컨소시엄, 협업체(예: ATI 등) 형태의 중소기업 간 교류 및 무역협회 간 협력 촉진, 산업·상업 관련 회의에 상호 참여 장려
- 양 당사자의 관할 지역 내 투자 기회 발굴과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 참여와 지원

제2조 법령 준수

본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및 이탈리아의 관련 법령, 적용 가능한 국제법, 그리고 이탈리아 측 당사자에 대해서는 유럽연합(EU)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여 이행된다.

제3조 협력 활동

제1조에 명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,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국제적 중요성을 지닌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로 합의한다.

-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절단 파견 등 공동 프로젝트의 추진
- 극장 간 협약을 통한 공연 교류
-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장소 및 대표적인 문화 명소의 공동 가치 제고
- 오페라의 교류 및 공동 제작
- 장인정신과 전통 식음료 문화 및 수공예 산업(예: 루트리에, 레이스, 와인 등)과 같은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
- 문화, 창조, 디자인 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인재 교류, 연수 및 이동성 확대, 관련 중소기업과 공급망에 대한 지원
- 중소기업 간 교류 및 협력 증진, 공급망 및 무역협회에 대한 지원, 지역 기업 연합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공동 활동 강화
- 기업, 기관, 산업 관계자 간 계약, 협정 및 의정서 체결

양 당사자는 기업 및 문화 분야 종사자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.

제4조 재정 중립

본 양해각서의 이행은 양 당사자 및 해당 국가에 어떤 재정적 부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.

제5조 정보 공개

양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해당 지역의 관련 대사관에 통지한다.

제6조 수정 및 추가

본 양해각서에 대한 수정 및 추가 사항은 양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하에 이루어지며, 이탈리아 측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의 승인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준수한다.

제7조 해석상의 이견

본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양 당사자 간의 직접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다.

제8조 개인정보 보호

양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명시된 활동 수행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양해각서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.

제9조 효력 및 기간

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서면 통지를 통해 양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할 경우, 각국의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갱신할 수 있다.

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.

양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의 조건 이행에 있어 선의로 협력하되,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아니며,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.

본 양해각서 종료 결정은 진행 중인 사업의 종단을 초래하지 않는다.

본 양해각서는 _____에서 _____에 서명되었으며, 한국어, 이탈리아어, 영어 3개 언어로 작성된 원본 3부가 각각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대한민국 서울특별시	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
성명: 오세훈 직책: 서울특별시장	성명: 직책:

※ 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(친선결연 등의 의결)